

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장님!

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남 제3선거구 최영주 의원입니다.

□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

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□ 본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
□ 서울시는 「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」 제8조에 따라

인권영향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,

이는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

실제적·잠재적인 위험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입니다.

□ 「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」는

인권영향평가에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

인권침해 우려로 개정을 권고 받은 바 있으며,

이에 서울시 행정 순화어 사용으로 인권 친화적 조례를 만들고자
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은

노점상을 순우리말인 거리가게로 순화하는 것입니다.

□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,

본 개정안을 통해

서울시의 행정작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
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,

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